

#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0. 6. 21(월)  
산 업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10. 6. 4
- 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10. 6. 4
- 라. 상정일자 : 2010. 6. 15(제1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)
  - 제안설명 :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수
  - 검토보고 : 산업전문위원 김복기
  - 질의 및 토론
  - 수정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비용 지원 및 농기계수리센터 와 농기계 수리점을 활용하여 농기계 수리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농기계수리센터의 사업을 규정함. (안 제3조)
- 농기계수리센터의 수리요원 및 장비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)
- 농기계 수리비 지원 금액 및 기준을 규정함.(안 제5조)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환수 근거를 규정함.(안 제6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○ 조례개정 근거와 관련하여

- 본 조례안은 점차 고령화 되어 가는 농업인들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
- 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 편의 증진을 통해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운영중인 농기계수리센터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,
- 지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시 농기계 수리비 보조율을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라 사료됩니다.

#### ○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는 농기계수리센터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열거하고
- 안 제5조에서는 농기계수리시 부품대금 징수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종전 조례와 달리
  - 농기계 부품대금 지원대상을 센터에서 뿐만 아니라 농기계수리점에서 수리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
  - 지원금액을 1농가당 연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안으로, 아울러 농기계 1기종당 지원금액을 5만원에서 대형농기계는 10만원, 소형농기계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.

#### ○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, 수리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

-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‘지원대상 농기구 5기종’의 대상기종에 대한 세부설명과 함께 지원대상 소형농기구의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과
- 강화·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관내 농기계 수리 사업량 및 소요비용 추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

○ 조례내용상 문맥의 흐름을 정확히 하고자,

- 안 제3조 제1항 제2호 규정중 농기계수리센터의 업무 수행범위를 확대하고자 ‘수리 시’를 삭제하고,
- 안 제5조의 조명에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명을 ‘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’으로 수정하고
- 안 제5조 중 제1항과 제2항의 불명확한 문맥의 흐름을 정확히 하고, 센터와 수리점의 지원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,
  - 제1항을 ‘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1호 대형농기계(트랙터, 콤바인) : 10만원 이내, 2호 소형농기계(경운기, 관리기 및 기타) : 5만원 이내’로 수정하고,
  - 제2항을 ‘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, 농기계수리점(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)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.’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배영민 위원

- 농기계수리비 지원 범위가 인천광역시의 강화, 옹진군이 포함되는 사항인가? 강화, 옹진에 별도의 농기계수리 지원 조례가 운용중에 있다면 시 조례로 인해 중복지원 되는 사항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됨.

○ 한도섭 위원장

- 인천시와 강화군, 옹진군의 지원 조례가 형평성이 있어야 함.

## < 답 변 >

### ○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수

-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119수리센터에서 운용중인 사항이며, 강화군과 옹진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리반을 운용중에 있음.
- 옹진군, 강화군에서도 별도의 조례에 의거 농기계수리반을 운용중에 있는 사항임.

## 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없음

나. 반 대 : 한도섭, 박희경, 배영민, 김성숙, 김을태 위원

## 6. 수정안 요지

### ○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“수리 시”를 삭제

### ○ 안 제5조의 제목을 “(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)”으로 수정하며,

제1항을 “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1호 대형농기계(트랙터, 콤바인) : 10만원 이내, 2호 소형농기계(경운기, 관리기 및 기타) : 5만원 이내”로 수정하고,

제2항을 “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, 농기계수리점(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)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.”로 수정

### ○ “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”는 내용으로 “안 제3조(적용범위)”를 신설하여,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를 안 제4조부터 제8조로 각각 수정.

## 7. 심사결과

- 수정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5명)

## 8. 기타 특이사항

- 없음

붙임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수리 시”를 삭제한다.

안 제5조의 제목 “(수리비용 지원 등)”을 “(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)”으로 하고,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대형농기계(트랙터, 콤바인) : 10만원 이내

2. 소형농기계(경운기, 관리기 및 기타) : 5만원 이내

② 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, 농기계수리점(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)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.

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8조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20px;">&lt;신 설&gt;</p> <p>제3조 (기능) ①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(생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수리시 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 업무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~4. (생략)</p> <p>제4조 (생략)</p> <p>제5조 (수리비용 지원 등) ① 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할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에 대하여는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금을 징수한다. 다만,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리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 경우 제2항의 단서를 적용한다.</p> <p>② 농기계수리점(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)에서 수리하는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</p>	<p>제3조 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.</p> <p>제4조 (기능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 업무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3.~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 (개정안 제4조와 같음)</p> <p>제6조 (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) ①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1. 대형농기계(트랙터, 콤바인) : 10만원 이내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2. 소형농기계(경운기, 관리기 및 기타) : 5만원 이내</p> <p>② 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, 농기계수리점(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)에서</p>

개 정 안	수 정 안
<p>할 수 있다. 다만,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 <u>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 <p>1. <u>대형농기계(트랙터, 콤바인) : 10만원 이내</u></p> <p>2. <u>소형농기계(경운기, 관리기 및 기타) : 5만원 이내</u></p> <p>③~⑤ (생략)</p> <p><u>제6조</u> (생략)</p> <p><u>제7조</u> (생략)</p>	<p><u>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.</u></p> <p>③~⑤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제7조</u> (개정안 제6조와 같음)</p> <p><u>제8조</u> (개정안 제7조와 같음)</p>

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 사업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리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농기계수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지역에 적용한다.

제4조(기능)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부속품 대체, 정비, 그 밖의 수리 업무
2. 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 업무
3.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의 부과징수
4. 농기계 119시스템 운영

② 농기계 수리는 내방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, 농기계 119시스템으로 지원 요청할 때에는 순회수리나 방문수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순회 수리는 도서지역·오지마을 등 수리점이 없는 지역에 우선 실시한다.

제5조(수리요원 및 장비) ① 센터의 수리요원은 전문자격을 갖춘 농기계 담당지도사, 기능직(기계직), 무기계약직 등으로 편성 운영한다.

② 센터에는 농기계수리장비와 필요한 공구함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수리 차량을 운행한다.

제6조(수리비용의 징수와 지원 등) ① 농가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센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품대금을 지원 할 수 있다. 다만,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5기종으로 하며 연간 3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대형농기계(트랙터, 콤바인) : 10만원 이내

2. 소형농기계(경운기, 관리기 및 기타) : 5만원 이내

② 제1항의 지원은 센터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징수할 부품대금에서 감면하고, 농기계수리점(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농기계 수리를 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자를 말한다)에서 수리한 경우에는 부품대금의 지원범위에서 농가에 지원한다.

③ 농기계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한 경우 해당 농가는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수리내역서 등)를 붙여 수리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가에 부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의 수리비용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부품대금의 회수)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대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부품대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제8조(사무의 위임)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